



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**예식장 및 장례식장 내 화환 반입 지도 협조**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」 제정 및 시행 ('20.8.21.)에 따라, '재사용 화환 표시제'가 8.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3. 일부 지역 등에서 예식장 및 장례식장 내 화환 반입 금지 동향으로 화원과 농가 등 업계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문을 기 시행(원예경영과-3979, '20.8.24)한 바 있으나, 일부 예식장에서 '화훼산업법에 따라 화환 반입을 제한하고 **쌀화환만 반입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**'는 내용으로 예비 신랑·신부 측에 문자 등으로 안내 및 공지하는 등 법 내용과는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< S 웨딩홀 사례 >

20년 8월 21일부터 화훼법(화환 실명제법)이 바뀌어 생화화환은 이제 반입이 안됩니다.

종이 쌀화환만 가능합니다. (중략)

저희도 생화 화환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나라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.
(이를 어길 시 1,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)

4. 이에 전국 시·도 및 시·군·구 등에서는 예식·장례식장 등에서 위와 같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, 관련 협회에서는 건전한 화환 유통문화 정착과 관련 업계와의 상생 도모를 위해 예식장 및 장례식장 내에 생화 화환이 반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'재사용 화환 표시제' 홍보 리플렛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수신자 전국 시도 및 시군구, 화훼관련단체, (사)한국예식업중앙회, (사)한국장례협회, (재)한국장례문화진흥원 (사) 늘푸른장사문화원, 전국 시도 및 시군구

사무관 **정현주** 원예경영과장 **김희중** 전결 2020.9.10.

협조자

시행 원예경영과-4263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261 팩스번호 044-868-0132 / juplus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